

# 건설업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제도 안내

건설안전본부 정진화 과장

건설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제도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확인하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근원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 심사 제도이다.

##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 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법 제48조)

- ①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제출 대상공사(시행규칙 제120조 2항)

-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 2. 대상공사의 적용범위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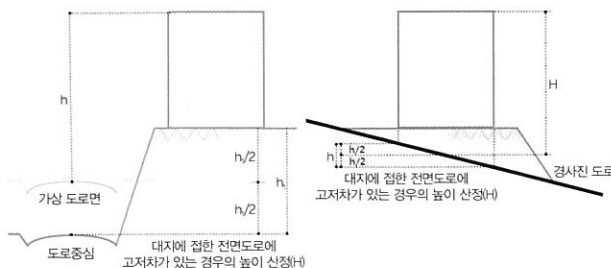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는 적용 제외

- ①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 도로가 다음의 ㉓ 또는 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 ㉓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 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 면으로 본다.
  - 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나목 사항은 적용 제외
- ②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③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다수의 철탑 공작물 건립시 트러스 등으로 철탑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로 각각의 철탑이 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 공작물로 보며, 다른 재질(로프 등)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로 분류한다.



나.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사유] 공동주택(주상복합 빌딩)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는 상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높이만 산정되고 하부의 근린생활시설의 높이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동 조항은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정한 것으로 산입법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취지의 건축물 높이와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를 제외함.

다. 지상높이가 3m 이상인 인공구조물(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의 높이는 설계도면상의 지표면으로부터 인공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① 인공구조물과 접하는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를 지표면으로 보고 높이를 산정한다.
- ② 인공구조물의 상단에 별도로 설치하는 피뢰침, 안테나, 광고탑 등의 시설물은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

서 제외한다.

- ②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 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마.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건축법상(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 3.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첨부서류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剛)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사. 그 밖의 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 개요 나. 해당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계획
제1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배관공사 라. 마감공사 마.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제1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사 라. 상부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제1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가. 작업 개요 나. 해당 작업 공사종류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 계획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가. 분진 및 소음 발생 공사 종류에 대한 방호대책
-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사. 작성·제출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자체심사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 2서식)를 제출

※ 자체심사자 기준(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

구분	착공	준공	비고
건축물, 인공구조물, 지하도상가 등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
교량	교량 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
터널	수직구 굴착 공사 또는 갱구부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수직구는 터널일부로 간주
댐	댐 기초공사	대상시설물과 관련 시설물 전체 준공	-
굴착	굴착공사	흙막이지보 공의 해체 및 되메우기 완료	-

아. 심사제도 개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를 1종 공사로 구분하여 심사 실시.

구분	공사종류	심사
1종 공사	-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 -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공단 본부
2종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지역본부, 지도원

※ 계획서 제출은 1, 2종 공사구분 없이 지역본부·지도원에 제출



자. 확인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확인 실시

끝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우리 건설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 ☺

